

1. 개정이유

혁신제품의 발굴·추천,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·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, 지정시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(안 제11조의2)
- 나.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11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4. 5. ~ 5. 8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) ①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

2. 사업추진계획서

3.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,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.

③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.

제11조의3(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)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

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명
2. 대표자
3. 주된 사무소의 주소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
2.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별지 제1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법인명	전화번호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된 사무소의 주소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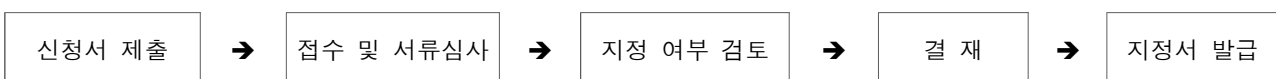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조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1부 2. 사업추진계획서 1부 3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,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조 달 청 (신청장조달총괄과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

1. 법인명:
2. 성명(대표자):
3. 사업자등록번호:
4. 주된 사무소의 주소:
5. 지정업무의 범위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

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

6. 지정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조 달 청 장 직인

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14일
신청인	법인명	지정번호	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
	주된 사무소의 주소		
변경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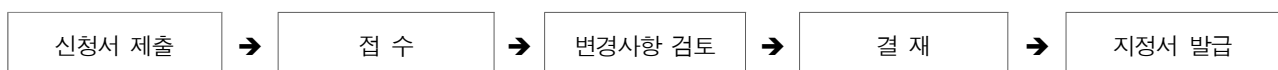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조 달 청 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1부 2. 지정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조 달 청 (신성장조달총괄과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) ①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정관</u> <u>2. 사업추진계획서</u> <u>3.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,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③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.

제11조의3(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)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명

2. 대표자

3. 주된 사무소의 주소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

2.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